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76,241,122	14,287,234
일반회계	471,565,970	14,146,979
특별회계	4,675,152	140,255
기타특별회계	4,675,152	140,255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351,898	70,557
주택사업특별회계	90,923	2,7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75,121	29,254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81,141	17,434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441,069	13,232

제 2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899,83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